AN스카우트분쟁“ 태풍의 눈 ”

동서석유 · 태광산업간 인력스카우트 둘러싼 법정공방 관심 집중

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간 AN사업을 둘러싼 인력스카우트분쟁이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스카우트분쟁이 기술상의 비밀침해로 결론 내려질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기술도입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기업들에 따르면, 동서석유화학은 94년 11월 태광산업이 AN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사의 핵심 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해 영업 및 기술상의 비밀이 침해당했다며 태광산업을 상대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이 신청에서 동서석유화학은『태광산업이 최고 수준의 AN생산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사 기술부장인 신용학씨를 임원으로 스카우트했다』며『이는 이미 기술상 계약관계인 BP케미컬 및 일본 아사히케미컬로부터도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광산업은 AN제조기술 가운데 환경문제와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몬산토기술을 도입했다』며 이는 BP케미컬과 아사히케미컬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제품생산 기술부문을 담당해온 기술부장을 스카우트해 이를 통해 핵심기술의 이전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자사는 BP기술 및 아사히기술과 전혀 별개인 몬산토 특유의 독자적인 최신기술을 실시하려는 것 외에 신용학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측의 기술을 이용할 여지가 없다』며 특정한 목적의 스카우트가 아님을 주장했다.
또 몬산토측이 기술제공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 자사가 몬산토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몬산토측을 배제하고 신청인측의 기술을 적용 또는 접목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동서석유화학의 기술 및 영업비밀 습득을 목적으로 한 스카우트라는 주장에 대해 태광산업은 몬산토기술 외에 다른 어떤 특정기술을 취할 목적의 스카우트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기업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광산업이 일부 시인한 유해성물질인 Depleated Uranium이 몬산토촉매에 극소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과 타촉매 와 BP, 아사히촉매에도 유해성물질이 있다는 주장가운데 법원이 어느쪽에 무게를 더 싣느냐에 따라 스카우트분쟁의 핵심이랄 수 있는 비밀침해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해당기업이 제출한 취지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몇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2월께 최종 판결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관련업계의 인력스카우트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16>